

연구윤리규정

[규정 재구조화 2023.12.08.]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 검증하기 위한 사항과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대학의 역할과 책임

- 제 4 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2.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한다.
 4.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5. 인지 또는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다른 대학교 등으로부터 우리 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2018.09.01.]

제 5 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총장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 등에 선정된 연구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

제 3 장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및 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본조신설 2018.09.01.]

제 7 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하

며, 연구 시작 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에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03.]

제 8 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본조신설 2016. 11. 1>

제4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 9 조(이해충돌의 범위) ① “이해충돌”이란 연구자가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② 이해충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금전적 이해충돌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적 이해충돌 :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직무의 이해충돌 :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지적 이해충돌 :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되는 경우

제 10 조(이해충돌의 보고 및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 밖에 제9조에 규정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본교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④ 창업을 하는 전임교원은 교수로서 지도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고, 지도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 11 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및 연구비 부정사 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 2017.09.0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삭제 2023.06.09.>
-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9.01>
- ③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01>
- ④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09.01>
- ⑤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09.01>

⑥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09.01>

제 1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3 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기획연구처장 (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08.1.30>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기획연구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8.1.30>

제 14 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9.01>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 15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6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4조 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삭제 2021.12.03.>

③ 예비조사는 기획연구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1.30.>

④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16. 11. 1>

제 17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8 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 1>

②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

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0 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 21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 22 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23 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25 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6 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피조사자의 관련 징계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대학내 절차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7 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08.1.30>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⑥ 생략
- ⑦ 연구윤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1항 중 ‘산학연구지원처장’ 을 삭제하고 ‘기획평가처장’ 을 ‘기획연구처장’ 으로 한다. 제6조의 제3항, 제9조의 제3항 중 ‘산학연구지원처’ 를 ‘기획연구처’ 로 한다.
- ⑧ - ⑫ 생략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03.>

1.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6.09.>

1. 이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처리 기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는 교외연구비의 경우 교외연구비 자체 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교내연구비의 경우 자체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외연구비 자체 감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개정 2023.12.08.>

1.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양식입니다.

1.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2.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표시)

가족 (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3. 특수관계인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 (해당 < > 란에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1.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논문 작성과 무관) < >	2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4.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역할 및 활동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을 첨부함

[별지 제 2호]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 연구자가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 또는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항을 공개 하는 양식입니다.

*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는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 논문을 의미함.

1.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2.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표시)

가족 (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3.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 (Conference)		학술지 (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대회명 : - 발표논문명: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참여저자 :		- 학술지명 : - 논문명: - 논문 투고 예정일 : - 참여저자 :	

4.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 주의사항 :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 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기획	연구수행	원고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저자 B	()%	()%	()%	()%	()%	
특수관계인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연구윤리 확인내용

항목	내용(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